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19일

검단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 권 조치사항 직 권 조치일자
이 *숙	이 *숙 1955-10-04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(마전동)	무단전 출거주불명등록 2023-06-12